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 안 번 호	16-17

제출일자 : 2016. 2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'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'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장애인 복지욕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협소한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舊 청사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확장 이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3. 사업의 필요성

○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탈시설화,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증가, 자립생활 이념 확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문화, 예술, 생활체육 등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함.
-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우 협소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(휠체어 사용, 시각장애인 이동 등)이 어려운 상태임.

○ 또한 現 마포장애인복지관은 좁은 공간 및 대피시설 부재로 인해 화재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건물 확충을 통해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○ 舊 보건소 건물은 1979년 9월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승강기, 화장실, 외벽 등 리모델링이 필요함.

○ 아울러,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,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음.

4.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계획

○ 사 업 명 : 舊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

○ 사업기간 : 2015. 9월 ~ 2018. 3월

○ 위　　치 : 마포구 성산로 128(성산동) 舊 청사내 보건소 건물

○ 건물규모 : 지상4층, 연면적 2,111.88㎡ (1979.9.3 준공)

층별	연면적(㎡)	배치(안)	비고
계	2,111.88		
1층	527.97	로비, 주간보호시설, 사무실	
2층	527.97	치료실(9개), 관장실, 사무실	
3층	527.97	프로그램실(5개), 소강당, 사무실, 요리교실	
4층	527.97	직업재활시설, 회의실, 식당	
옥탑	44.4	체력단련실(증축 가능시)	

※ 舊 보건소 건물 활용시 연면적 727㎡ 증가(1,384㎡→2,111㎡)

○ 총 공사비 : 3,895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총공사비	설계용역비	공사비	감리비	시설부대비	비고
3,895	95	3,344	419	37	

- 공사내용 : 창호교체, 승강기, 외벽, 화장실, 편의시설 등 설치

5.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○ 재원별 예산

- 시비 1,947백만원, 구비 114백만원, 복권기금 1,834백만원

○ 예산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비	2015년	2016년	2017년		2018년	
		구비	구비	시비	기타 (복권기금)	시비	기타 (복권기금)
총 계	3,895,000	18,700	95,000	1,266,050	1,201,640	681,450	632,160
공 사 비	3,344,000			1,113,910	1,049,500	614,940	565,650
설 계 비	95,000		95,000				
감리비	419,000			146,650	146,650	62,850	62,850
시설부대비	37,000	18,700		5,490	5,490	3,660	3,660

○ 예산확보방안
- 2017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 확보 : 2016년 2월 신청
- 2017년 서울시 복권기금 확보 : 2016년 3월 신청

6. 법적 근거

○ 지방자치법(법률 제12738호, 2014.6.3.) 제39조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922호, 2016.1.22.) 제36조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법률 제13383호, 2015.6.22.) 제10조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103호, 2015.2.16.) 제7조
○ 장애인복지법(법률 제13663호, 2015.12.29.) 제9조, 제81조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683호, 2015.11.30.) 제44조
○ 복권 및 복권기금법(법률 제13426호, 2015.7.24.) 제23조
○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

7. 향후 추진계획

○ 2016. 3월 : 2017년 복권기금 신청
○ 2016. 6월~ 12월 : 증·개축 설계(복권기금 확보 가능시)
○ 2016. 9월 : 現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계획 수립
○ 2017. 2월 ~ 2018. 3월 : 리모델링 공사

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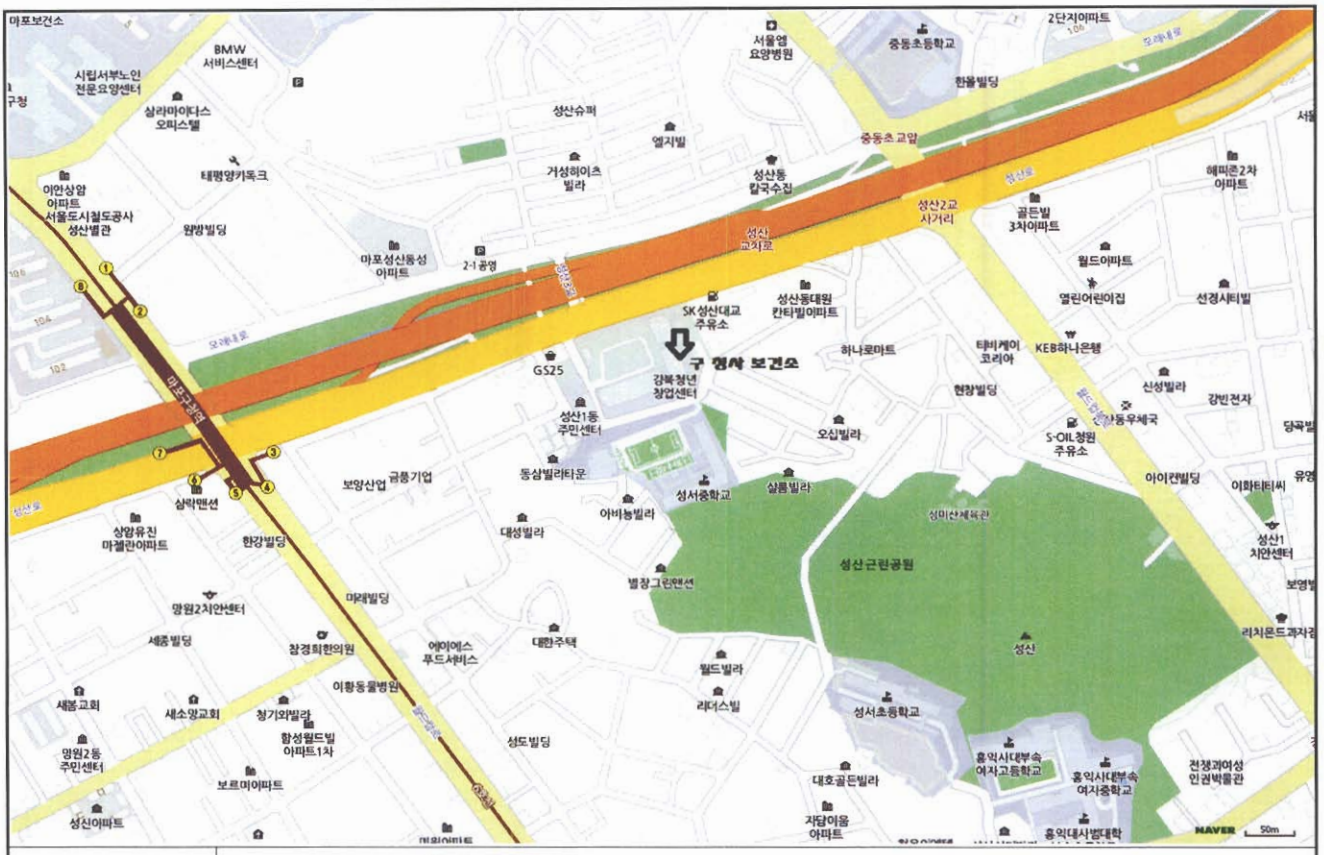

위치도 설명	舊 청사 내 보건소(마포구청역 3번, 4번 출구)

현 장 사 진

사진 설명	현재 舊 보건소 건물

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11-1)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		상반기			하반기			합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1	1	3,895,000	1	1	3,895,000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1. 매입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토지				1	1	3,895,000	1	1	3,895,000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4. 매각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5. 양여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
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1-2)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001	건물	마포구 성산로 128(성산동) 청사내 보건소	1 (2,111.88㎡)	3,895,000	2015. 9월 ~ 2018.3월	리모델링	

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
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(3) 기타 취득은 관리부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
(4) 기타 작성요령은 "양식 11-4"를 참조